

주택 종부세율 최고 3.2%로... 근로장려금 지급 3배 늘려

부동산·금융·세금·고용 분야

2019년부터 주택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0.5%에서 0.6%로,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0.5%에서 0.9%로,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75%에서 1.3%로,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1.0%에서 1.8%로,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는 1.5%에서 2.5%로, 94억원 초과인 경우 2.0%에서 3.2%로 각각 인상된다. 종합합산토지의 세율은 현행보다 0.25~1.0%포인트 오른다.

종부세를 분납할 수 있는 대상자 기준도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확대된다. 현재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로 돼 있는 분납기한은 납부 기한 경과 후 6개월로 늘어난다.

주택임대소득 2019년부터 과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2019년부터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매출세액 우대공제율(2.6%, 1.3%) 적용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부여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사실상 관계까지 고려해 판단된다. 사실상 관계인 경우 배우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됐으나 2019년부터는 법률상 이혼했다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들은 배우자로 간주된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 금액이 현행 2400만원 이하에서 2019년부터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그동안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2019년부터 과세된다.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거나 2020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었으나 2019년부터는 모든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지연등록 가산세가 부과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합해 1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면세점 추가설치 요건 완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청년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2019 금융·재정 조세

종부세 개편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 연 5%p씩 인상(2019년 85%)
 주택 및 종합합산 토지 세율 조정
 조정대상지역 2주택 세 부담 상한 150% → 200% 3주택 이상 150% → 300%
 종부세 분납 500만원 초과(2개월 분납) → 250만원 초과(6개월)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 과세 제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세대 범위 명확화
 - 사실혼 포함

노후 경유자동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 10년 넘은 경유차 폐차 후 구매 개소세 70% 감면

자영업자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 500만원 → 1000만원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 인하
 - 기준금액 2400만원 → 3000만원 이하

입국장면세점 도입
 - 중소·중견기업 한정, 담배 및 검역대상품목 등은 제한

유형·단란주점,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 카드사가 결제액에서 부가세 납부 후 입금

장병내일준비자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월 40만원, 복무 기간 24개월 한도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시행, 사업자 등록
 - 분리과세 선택하거나 5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 개인신용평가의 정확성 등 제고 1~1000점으로 전환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근로장려금 확대개편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150만원 지원
홀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260만원 지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300만원 지원
재산요건	가구당 2억원 미만 재산 1.4억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연매출 500만원 이하 가맹점
우대수수료를 적용	수수료율 인하 유도
5~10억원: 1.4%	30~100억원: 0.3%p인하
10~30억원: 1.6%	100~500억원: 0.22%p인하

자료: 기획재정부

/뉴시스 그래픽

이하인 사업소득자가 가입 대상이다. 의무가입 기간은 2년이고 연 납입 한도는 600만원이다. 전체 가입 기간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면세점 사업자의 특허 기간(5년)이 종료하면 대기업은 1회(5년), 중소·중견기업은 2회(10년) 갱신할 수 있다. 현재 대기업은 특허 갱신을 할 수 없고 중소·중견기업은 1차례 갱신만 허용되는데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기간이 늘어난다.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신규특허 요건도 완화된다. 대기업 면세점은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보다 2000억원 이상 늘거나 지자체별 외

는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모든 관세를 감면받는다. 2018년 12월 현재 부분 복귀업체는 2억원, 완전 복귀업체는 4억원 한도에서 관세를 감면받았다.

청년 고용면 공제액·기간 확대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은 1명당 공제 금액이 100만원씩 추가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면 연간 1100만원을 공제받는다. 공제 기간은 대기업은 1년에서 2년으로, 중소·중견기업은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국외에서 2년 이상 사업한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부분 복귀해 세액 감면 해

으로, 홀벌이 가구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총액이 약 3배로 확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자녀 1인당 지급액이 현행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늘어나고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자녀장려금 신청도 허용하는 등 대상이 확대된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공제액이 일당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된다.

만 19세 이상에서 29세 이하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가능 연령이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또 현재는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지만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이들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개인 신용평가 점수제로 전환

2018년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됨에 따라 올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2019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신용평가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 신용평가체계가 점수제로 전환된다. 현재 1~10등급으로 구분된 개인 신용등급이 1~1000점으로 세분하는 점수제로 바뀐다. 내년부터 5대 주요 은행(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이 시범 실시하고 2020년엔 전 금융권이 도입한다.

혁신적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금융 부문에 도입된다. 내년 4월부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법령 규제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기간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5억~10억원 구간에 있는 19만8000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 감소하고 연 매출 10억~30억원 구간에 있는 4만6000 가맹점은 평균 505만원 줄어든 것으로 당국은 추산했다. /내유리 기자 yull15@metrosoo.co.kr

